6
금융위원호

# 보도자료

• 생산적 금융

• 신뢰받는 금융

• 포용적 금융

보도	2018.11.27(화) 석간부터	배포	2018.11.27(호)
----	--------------------	----	---------------

	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		서 나 윤 서기관(02-2100-2533)
	송 현 도(02-2100-2530)		장 현 근 주무관(02-2100-2758)
	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과장 김 완 수(044-200-2422)		이 현 정 사무관(044-200-2398)
		•	
	기획재정부 혁신성장본부 과장		박 창 규 사무관(02-6050-2509)
## OL TI	범 진 완(02-6050-2518)	E4 E4 T1	
책 임 자	통계청 통계기준과장	담 당 자	이 동 근 사무관(042-481-2052)
	손 은 락(042-481-2060)		이 중 는 시구진(042-401-2032)
	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장		자 겨 오 브구자(02 3145 8001)
	이 준 호(02-3145-8300)		장 경 운 부국장(02-3145-8001)
	금융감독원 핀테크지원실장		71 Q EU EIXI/02 21/15 7125)
	이 근 우(02-3145-7120)		김 용 태 팀장(02-3145-7125)

# 제 목 :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 추진

- 「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/F」 1분과 1차 회의 결과
- ◈ 지난 11.16일 국무총리 오찬간담회에서 은행권은 디지털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은행의 핀테크 기업 인수를 허용해 줄 것을 건의
  - \* 동 이슈는 「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/F(이하 "T/F")」 1분과 주제
- ◆ 금융위 등 관계기관은 금융회사의 핀테크 출자를 허용한 과거 유권해석('15.5월)의 운용실태를 점검하고 보완방안을 마련키로 함
- **① 금융회사가 출자가능한 핀테크 기업 대상범위 확대**(유권해석)
  - ❷ 투자가능 여부 확인, 승인심사 등에 신속절차(Fast-Track) 마련
  - ❸ 관련 법령에 '핀테크 기업'의 개념 정의 명확화('19년)
  - ◆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핀테크 관련 전문 통계분류 체계를 검토 하여 향후 핀테크 산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정책개발에 활용

# - [

## 회의 개요

- □ 지난 '18.10.19일 Kick-off한 「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 개혁 T/F」는 '18.11.26(월), 제1분과 1차 회의를 열어,
  - 지난 주 국무총리 오찬간담회('18.11.16)에서 은행권이 건의한 "은행의 핀테크 기업 인수 확대" 등을 포함하여 1분과 주제인 '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 활성화 방안'을 논의하였음

#### < T/F 제1분과 1차 회의 개요>

- **일시/장소**: 2018.11.26(월), 10:00 ~ 11:20 / 금융위원회 대회의실
- **참석자**: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·금융혁신과장, 국조실 규제조정실과장, 기재부 혁신성장본부 과장, 통계청 통계기준과, 금감원 핀테크지원실장, 안수현 한국외대 교수, 정성구 변호사, 구자현 KDI박사, 하나·국민은행 본부장, 은행연합회, 생보·금투·여전협회 등
- **주요 논의사항** :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 등

# Ⅱ 주요 논의내용

## 1. 그간의 경과

- □ 금융위는 '15.5월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출자<sup>\*</sup> 관련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 유권해석 실시('15.5.26)
  - \* 금융회사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 및 금융업 관련 일부 업종外 비금융회사 소유 제한

#### < '15.5.26일 금융위원회 유권해석 주요내용 >

- ◈ 금융지주법, 은행법, 금산법의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'금융업 관련 회사 및 이에 준하는 회사 등'에 핀테크 업무범위가 포함되는 것으로 사전적 유권해석
  - 가. 핀테크 업무범위
    - ❶ 전자금융거래법 : 전자금융업, 전자금융보조업
    - ② 은행업감독규정 시행세칙 : 자료 처리·전송프로그램 제공·관리, 전산시스템 판매 또는 임대, 자료를 중계·처리하는 부가통신 업무
    - ❸ 신사업 분야 : 금융데이터 분석, 금융 S/W 개발, 금융플랫폼 운영

#### 나.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

- o 중소기업: 주된 업종\*이 핀테크 업무 \* 평균매출액 등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
- o 대기업 : 핀테크 사업부분이 전체 매출·자산의 75% 이상
- □ 또한,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('15.12.29 시행)으로 금융지주가 자회사 등으로 둘 수 있는 금융밀접업종 범위에 핀테크\* 포함
  - \*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 및 전자금융보조업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업무
- ※ '15년 유권해석 및 법규개정 이후, 금융회사가 자회사 등으로 **핀테크 기업에 출자한 사례는 총 3건**

연번	금융회사	핀테크 기업			지브으	주식
언인	ㅁ쯍쐬시	업체	자 <del>본금</del>	접	지분율 종	
1	○ ○ 금 융 지 주	A사	500억원	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·관리	51%	'16.8월
2	△△카드	B사	70억원	전자지급결제대행	100%	'16.12월
3	□□투자증권	C사	20억원	응용 소프트웨어 개발·공급	100%	'18.6월

### 2.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확대 필요성

- ①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금융회사들도 기술혁신을 통한 핀테크를 추진 중이나, 금융회사 내부 운용(in-house)에는 한계
- 기존 금융회사 조직 내에서 **혁신적 서비스를 직접 운영**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, 핀테크 기업 투자를 통한 수익 창출 등을 고려할 때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·인수 활성화 필요
- 최근 해외 주요 금융회사들은 다양한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 및 인수를 통해 서비스 혁신 모색 중
- ※ [참고]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투자관련 해외 사례
- ◈ 미국 골드만삭스, **소셜미디어 업체 Dataminr** 투자('15.3월)
  - : SNS상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중요 정보·동향 제공
- ◆ 스페인 BBVA, 비금융 빅데이터 분석업체 Madiva('14.12월) 및 UX 디자인 업체 Spring Studio 인수('15.4월)
  - : 빅데이터 기반 신사업 모델 발굴 및 고객 친화적 App 개발 등에 활용
- ★ 캐나다 TD Bank, 인공지능 분야 벤처기업 Layer6 인수('18.1월)
  - : AI를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별 고객의 요구 파악·예측
- ② '15년 유권해석 및 법규개정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에 대해 불명확성 잔존
- 적극적 유권해석에도 불구, 출자 가능 범위가 열거식(붙임)으로 제한되어 새롭게 등장하는 핀테크 기업 출자에 한계
- 일부 법령(보험업법 등)의 경우, 유권해석의 여지가 없어 핀테크 기업을 자회사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하려면 법령 개정 필요
-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**출자 가능 여부**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신속하고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의견
- ③ 또한, 핀테크 산업에 대한 통계 분류체계가 불명확하여 산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정책 개발에 한계
- 현재 금융업권 등에서 통용되는 핀테크 기업들은 **한국표준산업** 분류상 '금융 및 보험업' 또는 '정보통신업' 등에 산재
- 핀테크기업 아닌 일반 정보통신업체 등이 핀테크 관련 통계에 상당수 포함되어 **핀테크 산업** 관련 **정확한 통계산출 곤란**

## 3. 개선방향

## □ 기존 유권해석 안내 및 핀테크 기업 대상범위 확대 추진

- 현재 **출자 가능**한 **핀테크 범위**(붙임)를 全금융권에 **재 안내**
- 금융회사들로부터 **핀테크 업무 범위에 추가** 필요성 있는 업종 의견수렴 후, 유권해석을 확대하여 법적 불확실성 해소
  - 출자 가능 여부에 대한 사전질의, 유권해석 등으로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을 단축하는 등 출자 관련 인허가 부담 완화

#### ※ [참고] 유권해석 확대실시 효과

구 분	금산법	금융지주회사법	은행법	보험업법
적용회사	동일 기업집단내 모든 금융회사	금융지주회사	은행	보험회사
출자제한비율	5%(+사실상 지배), 20%, 25%, 33%	비금융회사 주식소유 금지	15%	15%
제한비율이상 출자가능회사	①금융·보험업 ②민간투자대상사업 ③금융기관 업무와 직접 관련 있거나 효율적 업무수행 위해 필요한 회사	①금융·보험업 ②금융업 영위와 밀접 관련 회사 - 전산처리, 조사연구, 고유업무와 직접 관련 또는 효율적 업무수행위해 필요한 회사(전금업자 등) ③인허가 불요 금융 기관 등	①금융위가 정하는 업종(은행, 보험, 저축은행, 은행업무 관련 금융전산업 등) ②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	①금산법상 금융기관 ②신용정보업 ③보험계약 유자·해자· 변경 등 관리업무 ④보험업 관련 업무 - 손해사정, 대리, 조사, 전산시스템 ·SW 대여판매 및 컨설팅, 인터넷 정보서비스 제공)
필요절차	사전승인 <sup>*</sup> * 개별법상 승인시 면제	①: 편입승인 ②③: 편입신고	① : 사후보고 ② : 사전승인	① ② ③ : 사전승인 ④ : 사전신고
유권해석 효과	밑줄에 포섭되는 핀터 (단, 금융위 승인·보	해석여지 없음 법령개정 필요		

<sup>\*</sup> 금투업자, 여전사 : 금산법상 출자제한만 적용 / 저축은행 : 상장 15%, 비상장 10% 이상 소유 불가능

#### - < 회의시 주요 논의사항 > ---

- ■4차 산업혁명은 기술의 융·복합을 기초로 하므로, 금산법 등 금융관련법령에서의 '금융 관련 업무의 직접 관련성 및 효율성'에 대한 폭넓은 확대 필요 (은행권, 여전·금투협회 등)
- ■금융회사가 운영 중인 **핀테크 랩**을 통한 **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**가 **금융회사와의 협업을 통해 Win-win 성과**를 내려면 자회사 출자제한 완화 필요 (은행권, 생보협회)
- ■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뿐만 아니라, 금융회사의 **핀테크 투자, 부수업무 운영** 등에 있어서 **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조치**가 핀테크 활성화 유도할 것 (은행권 등)
- ■골드 만 삭 스 의 국 내 벤 처 투 자 사 례 , 중 국 의 핑 안 보 험 , 금 융 과 핀 테 크 의 joint-venture 사 례 등을 규제 완화시 참고할 필요 (T/F 민 간 위 원 , 생 보 협 회 등)

- ② 현행 법령 및 유권해석에 따른 핀테크 기업 투자 가능여부 확인 및 관련 승인 절차상 Fast-Track 마련·운용
- 유권해석, 비조치의견서 및 자회사 출자 관련 금융회사 요청시, 금감원내 협의체<sup>\*</sup> 및 금융위 법령해석심의회 등을 통해 신속 처리
  - \* 다수 부서에 걸친 핀테크 인허가 이슈 등의 원스톱 해결 위한 핀테크전략협의회 등 활용
  - 특히, 금감원내 다수 부서와 관련된 건은 **핀테크지원실** 등이 중심이 되어 의견조율 및 신속검토 추진

#### ̄< 회의시 주요 논의사항 >

- ■신사업 진출을 위해서는 신속한 의사결정 및 투자진행이 필요한 바 영업전략, 기술 및 노하우 유출 없이 관련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필요 (T/F 민간위원, 은행권 등)
- ■Fast-Track을 운용하되, 수요를 선제적·적극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. 우선 금융협회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핀테크 출자 수요을 점검하여 필요시 일괄검토 추진 (기재부 등)
- ■개별회사가 투자가능 여부를 판단·先투자하고, **감독당국이 사후적으로 점검**하여 부적절한 경우 일정기간내 매각의무 부여하는 방안도 **아이디어 차원**에서 검토 가능 (T/F 민간위원)

## ③ 금융법령상 핀테크 개념정의 명확화 및 관련법령 개정 추진

- 금융관련 법령상(예: 전자금융거래법,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등) **일반적** ·**포괄적 핀테크 기업 개념<sup>\*</sup>을 정의** 
  - \* 예) 정보통신기술 또는 그 밖의 기술을 활용하여 금융회사의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성 향상에 기여하는(또는 기여가 예상되는) 금융관련 업무

#### ※ [참고] 핀테크 기업에 대한 해외 입법례 (포괄적 규정 사례)

- ◈ 일본 은행법 제16조의2(은행의 자회사의 범위 등) 中
  - : 정보통신기술 기타 기술을 활용하여 해당 은행에서 영위하고 있는 은행업의 고도화 또는 해당 은행 이용자의 편의성 향상에 기여하는 업무 또는 기여한 다고 예상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 ('17.5월 개정, '18.6월 시행)
- ◆ 미국 뉴욕주 금융서비스법 제7조 中 '핀테크 상품 또는 서비스'
  - : 문제를 해소하거나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기타 상품, 서비스, 사업모델 또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·융합하거나 기존 기술을 재탄생시킨 금융상품 및 서비스
- 금산법·은행법·지주회사법·보험업법 등에 **금융회사가 자회사로** 소유할 수 있는 업종으로 '핀테크 기업'을 명확하게 규정
  - 핀테크 기업 출자관련 인허가 절차의 신속·편리한 처리 가능

#### < 회의시 주요 논의사항 >

- ■핀테크 정의시 핀테크의 범위를 어디까지 포함시킬 것인지는 출자 외에도 **타 법령상의**관련 규제, 검사 및 제재, 세제 이슈 등까지 종합적인 검토 필요 (T/F 민간위원 등)
- ■유권해석의 적용대상이 아닌 보험업법령의 경우, 가능한 신속하게 개정 추진 (금융위)

## 4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핀테크 전문 통계 분류체계 개발 검토

○ 체계적인 핀테크 산업 관리 및 정책개발에의 활용 등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관련 핀테크 분야 전문 통계분류체계 개발 검토

#### <sup>---</sup> < 회의시 주요 논의사항 >

- ■현장에서의 가장 큰 불만 중 하나가 핀테크 관련 통계의 불명확성임. 다양한 규제의 적용 가능성, 조세혜택 등으로 연결되므로 체계적인 정리 필요 (T/F 민간위원)
- ■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분류, 혁신성장 모델 등을 참고하여 핀테크 관련 전문 분류체계 개발 추진 (관계부처 합동)

### ※ [참고] 현재 핀테크 기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구분

구 분		상세 내용	표준산업분류 <sup>*</sup>	
	저지그용어다	전자자금이체업, 선불지급수단, 전자지급결제대행	금융 및 보험업 (금융지원 서비스업)	
	전자금융업자	전자화폐 발행관리, 직불전자지급수단, 결제대금예치업	금융 및 보험업 (분류 안 된 금융업)	
금융위	전자금융보조업자	카드 VAN, 은행 VAN 등	금융 및 보험업 (금융지원 서비스업)	
유권 해석		정보시스템운영업체, 용역업체 등	정보통신업	
	금융전산업(은행)	자료처리전송프로그램 제공, 전산시스템 판매임대, 자료 중계처리 부가통신업무	정보통신업	
	최근 신경향	금융데이터 분석, 금융 소프트웨어, 금융플랫폼	정보통신업 또는 금융 및 보험업	
은행권의 편의상 분류		S/W개발·공급업 등 9개 분야	정보통신업	
		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	금융 및 보험업 (금융지원 서비스업)	

<sup>\*</sup> 음영표시된 부분은 표준산업분류상 해당영역이 불명확하여 임의 분류



# 향후 계획

- □ 유권해석 안내 및 신속절차 마련·운용 : 즉시
- □ 금융업권 수요조사 및 일괄검토 : ~ '19년 초
- □ 유권해석 확대 실시 : ~ '19년 초
- □ 관련 법령 개정 : '19년 중 추진
- □ 전문 통계 개발 :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'19년 중 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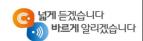
#### < 개선과제별 추진일정 및 소관부처 >

Ŧ	그 분	추진 내용	추진시기	추진기관
① 유권해석		①-1. 기존 유권해석 안내	즉시 시행	금융위
•	안내·확대	①-2. 의견수렴 후 확대	'19년 초	금융위
		②-1. 비조치의견서 발급	즉시 시행	금감원
	신속절차	②-2. 협의체 등 활용 신속회신	즉시 시행	금융위·금감원
운용		②-3. 금융권 핀테크 출자 수요 점검 및 일괄 검토	'19년 초	금융협회 금융위·금감원
		③-1. 법령상 핀테크 개념 정의	'19년 연내추진	금융위
③ <b>법령 개정</b>		③-2. 금융법령상 자회사 소유 가능 업종으로 명확화	'19년 연내추진	금융위
4 .	통계 정비	④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핀테크 분야 전문분류체계 개발 검토	'19년 연내추진	국조실 기재부 금융위 통계청



☞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http://www.fsc.go.kr

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@korea.kr



구 분	내 용	비고	
	전자화폐 발행·관리	법 28①	
	전자자금이체업무	법 28②	
전자금융업자	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·관리	법 28②	
(전자금융	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·관리	법 28②	
거래법)	전자지급결제대행(Payment Gateway)	법 28②	
	결제대금예치업(에스크로계좌)	시행령 §15③	
	전자고지결제업	시행령 §15③	
	정보처리시스템으로 신용카드업자의 신용 카드 승인 및 결제 그 밖의 자금정산	전자금융감독규정 §3 i .	
전자금융 보조업자	정보처리시스템으로 은행의 자금인출업무, 환업무 및 그 밖의 업무를 지원	전자금융감독규정 \$3 ii.	
(전자금융 거래법)	전자금융업무와 관련된 정보처리시스템을 금융회사·전자금융업자를 위해 운영	전자금융감독규정 \$3iii.	
	1호~3호 사업자와 제휴·위탁·외부주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정보처리시스템 운영	전자금융감독규정 §3 iv.	
- 4 1 1 1	금융회사 업무 관련 자료 처리, 전송 프로 그램 제공 및 관리	은행업감독규정 시행세칙 §35 i .	
금융전산업 (은행업감독규정 시행세칙 준용)	금융회사 업무 관련 전산시스템 판매 또는 임대	은행업감독규정 시행세칙 §35 ii.	
· 10 11 1 1 10)	금융회사 업무 관련 자료 중계·처리하는 부가통신 업무	은행업감독규정 시행세칙 §35iii.	
	(금융데이터 분석) 고객과 관련된 다양한 금융 데이터를 수집·분석	신용정보분석 개발, 빅데이터 개발	
新 사업부문	(금융소프트웨어) 스마트 기술을 이용한 혁신적 금융업무·서비스 관련 소프트웨어 제공	금융모바일앱, 인터넷뱅킹, 금융보안 등	
	(금융플랫폼) 금융기관 개입 없이 자유 롭게 금융거래할 수 있는 거래기반 제공	회원제 증권정보 제공업 등	